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2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 의원)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현행법상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수립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해당 기본계획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뿐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 관계 기관·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¹⁾,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마약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런데 마약류 범죄는 그 전과 속도가 빠르고 범죄의 수법이 급속도로 다변화되며 신종 마약류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무분별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마약류 관련 대책을 빠르게 재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기보다는 신종 마약류 출현 및 정책환경 변화 등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마약류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마약류 관련 정책은 시행된 이후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 주기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신종 마약류 출현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수립하는 부처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원)

대안반영폐기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